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286호, 2020.05.19. 공포, 2020.1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범위를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생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범위 정비(안 제13조)

나. 생활관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수렴 예정

라. 기 타 : 1)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심사 예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을 “법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8)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개별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등록한 자는 별표 3 제1호나목8)사)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